

의 안 번 호	제102호
회 의 연 월 일	2025. 9. 1. (제571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생활안전교통국)
제출연월일	2025. 8. 18.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계장, 운전면허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면허소지자에 대한 운전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차량의 표지·도색, 강사배치기준, 수강생 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이 갖추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학과교육 시간을 제1종·제2종 면허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연수교육 신설 등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교육의 경우(이하 ‘도로연수교육’이라고 한다.)의 경우 자동차의 기준 및 강사의 자격요건 등을 운전면허 취득 이전에 받는 교육인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실정으로, 도로연수교육을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에서 분리 명시하며, 도로연수교육을 위해 도로주행교육과 별도의 기준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후 고속도로 주행 등 다양한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교육과 도로연수교육을 분리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및 도색, 강사당 차량배치기준, 도로연수를 위한 도로의 요건 등 기존의 도로주행교육보다

완화된 별도 기준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2항, 제10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7조, 제122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16, 별표 17, 별표 31, 별표 32)

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규정 개정

2025년 하반기부터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7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등에 활용함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대체할 수 있게 명시하고자 함(안 별표 16)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 간소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서류업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이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할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 시 출력·보관하도록 명시한 서류 중 학과평가 서류철을 삭제하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 중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수강료 영수증 원부철, 현금출납부를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17)

라.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학과교육 시간 축소

2016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통면허의 학과교육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학과교육시간은 기존 5시간으로 유지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보통면허의 학과교육시간인 3시간으로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32)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2항제4호 중 “(도로주행교육을”을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을”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3호 중 “도로주행교육용”을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중 “자동차에는”을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는”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표시와”를 “표시(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정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를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가”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를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용 자동차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을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주행교육용”을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운전 교육을 위한 기능교육장 및 도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에 따를 것
2.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따를 것
3. 도로연수교육은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 내 도로에서 시작하고 종료할 것. 다만, 교육생의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 내 도로를 포함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연습운전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것.”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것.”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준용한다.”를 “준용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4조제3호에 따른 도로에서 실시할 것
2. 도로연수교육을 담당 또는 겸임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3. 도로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할 것
4. 교육내용 및 1일 1명당 교육시간 등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

제10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연수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생에 대한 출석 및 수강사실 확인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감독하여야”를 “감독해야”로 한다.

제122조제1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도로연수교육 이외의 강사 업무를”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22조제2항 전단 중 “지정”을 “지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4항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7의 연번 21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	-	<삭 제>	1년
----	---	---	-------	----

별표 17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는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별표 17 비고 제2호 가목 중 4)에서6)까지, 나목 중 5)에서7)까지 삭제한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면허종별 교육과목		보통(연습) 면허	대형면허, 대형견인차 면허 및 구난차면허	소형견인차 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학과 교육	운전이론 등	3	3	3	3	3
기능 교육	기본조작	4	5	2	5	4
	응용주행		5	2	5	4
	소 계	4	10	4	10	8
도로주행교육 (연습면허소지자)		6	·	·	·	·
계		13	13	7	13	11

별표 32 제1호마목 중 “도로연수”를 “도로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제1종 소형면허의 학과 교육의 단계별란 중 “5교시”를 “3교시”로 하며, 같은 호 제2종 소형면허의 학과 교육의 단계별란 중 “5교시”를 “3교시”로 하고, 같은 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학과 교육의 단계별란

중 “5교시”를 “3교시”로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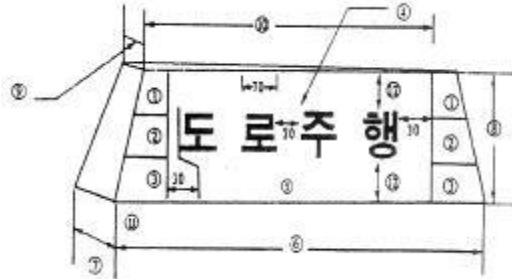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1]

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제102조제2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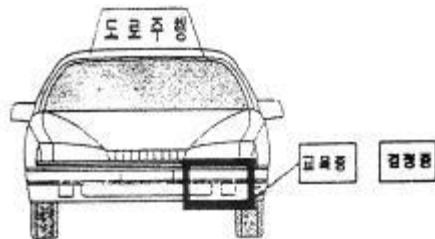
1. 표지등 모형 및 규격(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 ① 적색
- ② 황색
- ③ 녹색
- ④ 적색문자
- ⑤ 바탕색은 백색
- ⑥ 600밀리미터
- ⑦ 160밀리미터
- ⑧ 180밀리미터
- ⑨ 60밀리미터 ⑩ 500밀리미터
- ⑪ 100밀리미터 ⑫ 35밀리미터



2. 표지등 설치위치(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 차량지붕 중심위치에 앞뒤에서 볼 수 있게 설치
- 도로주행교육중에는 “교육중”이라는 표지를,
도로주행기능검정중에는 “검정중”이라는 표지를
각각 자동차의 앞뒤 범퍼에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부착



3. 도색 및 표지

- 바탕색: 황색(제1종 보통면허는 백색)
- 측면에 녹색으로 시·도 및 학원명(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명),
후미에는 백색원형바탕에 녹색의 차량고유번호를 표시



4. 제1종보통면허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도색(바탕색을 제외한다) 및 표지는 위에 준한다.

5. 표지 및 설치위치 등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

- 표지 규격: “도로연수중”이라는 표지(가로 30cm ×세로 11cm)의 규격 및 모양은 아래 그림과 같다.



- 표지 색상 및 제작 방법: 바탕은 노란색, 글씨는 검정색으로 하며, 앞면 및 뒷면의 표지는 반사지 스티커로 제작한다.
- 표지 및 위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는 앞면유리 우측(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하단 및 뒷면유리 우측 하단에 아래 그림과 같이 도로연수교육중임을 알리는 “도로연수중”이라는 표지(가로 30cm ×세로 11cm)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량 전면 표지(가로 30cm×세로 11cm)	차량 후면 표지(가로 30cm×세로 11cm)

6. 차량 옆면 표지 및 설치위치 등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

- 차량 측면 표지 등: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는 좌우 측면에 소속 시·도 및 학원명,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위 표지의 표지색 및 차량의 바탕색은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차량의 측면 표지는 무극성 자석을 이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차량 옆면 표지(무극성 자석을 이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좌·우 상호표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u>) 또는 <u>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을 -----</u>
1. ~ 3. (생략)	
4.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u>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u>)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변경등록) ① (생략)	제100조(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

을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 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 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

----- 표시(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 해야 ---.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가 -----

---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용 자동차의 -----

④-----
-----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

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
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
명서 1부

⑤ (생략)

제104조(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
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
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형상·구조
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

1. (현행과 같음)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운전 교육을 위한 기능교육장
및 도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
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
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형
상·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에 따를 것

2.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
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의 도
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따를 것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삭 제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u>실시</u> 하여야 한다. 1. <u>운전면허</u> 또는 <u>연습운전면허</u>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 2. (생 략)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명당 4시간을	3. <u>도로연수교육은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 내 도로에서 시작하고 종료할 것. 다만, 교육생의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 내 도로를 포함하여 운행할 수 있다</u>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 ----- <u>실시</u> <u>해야</u> ----. 1. <u>연습운전면허</u>----- ----- ----- ----- ----- -- 2. (현행과 같음) 3. ----- -----
---	--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도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 것 <단서 삭제>

4. -----

----- 것 <단서 삭제>

5. -----

----- 준용할 것

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4조제3호에 따른 도로에서 실시할 것

2. 도로연수교육을 담당 또는 겸임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제122조(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

제122조(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은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겸임하는 기능검정원은 영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교육용자동차 10대당 1명에 한하여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이 경우 도로연수

교육 이외의 강사업무를 -----

-----안 된다.

②

지장이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